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88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안상훈·김성원·신동욱

이성권 • 박충권 • 고동진

서일준 • 박성민 • 박성훈

강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접근성은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농인을 위해 병원 내에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농인들은 진료나 수술을 받을 때수어통역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 같은 현실은 '24. 6. 3. 발표된 국립국어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법으로 이용하는 응답자의 83%가 수어통역이 필요한 영역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였음.

더욱이, 종합병원은 예약 접수부터 진료, 검사, 수납, 처방, 다음 내원 예약에 이르기까지 업무 담당자가 상이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절차가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농인이 홀로 수어통역 없이 해당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설령, 농인이 수어통역사를 대동

해 병원에 내원하고자 해도 사전에 해당 지역 수어통역센터에 수어통역사 동반 일정을 예약하고 동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으로 하여금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그 밖의 종합병원의 경우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체계 마련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보다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종합병원 내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등 제공) ①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2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종합병원의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설></u>	제9조의2(종합병원 내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등 제공) ① 「의 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은 장애인이 의료서비 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사 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 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
제22조(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	원체계 마련의 구체적인 내용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비용 지원) ①

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8. (생략)
<신설>

② (생략)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u>1. · 2.</u> (생 략)

②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종합병원의 의사소통 지원체	
계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u>.</u>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	
<u>지 아니한 자</u>	
<u>2.·3.</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